

議案検討報告書

1. 提出者：大田直轄市長
2. 件名：大田直轄市駐車場条例中改定条例案
3. 案件要旨：別添參照
4. 檢討意見：別添參照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年12月日

産業・建設委員会

専門委員 鄭今弼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定條例案

檢討報告書

1992. 12.

産業建設委員會
専門委員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定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條例案은 1992. 12. 14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 12. 15.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改定된 駐車場法 (1991. 12. 14. 法律第4437號) 및 同法施行令 (1992. 6. 30. 大統領令第13672號) 및 同施行規則 (1991. 9. 5. 建設部令第492號, 交通部令第958號)에서 市長에게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地域特性에 따라 彈力的으로 定하여 效率의인 駐車場 業務를 推進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가. 駐車料金 未納者에 대한 加算金을 駐車料金의 4倍 以內로 強化 함 (案 第3條 第3項 第1號)
- 나. 國・公有地上에 設置한 附設駐車場을 一般의 利用에 提供도록함 (案 第18條의 3 第2項 第1號)
- 다. 駐車場 專用 建築物의 建築基準을 緩和하여 駐車場 設置의 活性화를 期함 (案 第18條의 4)
- 라. 市長이 推進하는 施策(10부제 운행등)에 參與하는 車輛에 대하여 駐車料金의 20%를 輕減하고 障碍人의 自家運轉車輛에 대하여 50%를 輕減 함 (案 別表 1 : 備考)
- 마. 駐車回轉率의 提高와 都心集中車輛을 防止하고 都心 交通疏通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2시간 超過 駐車時 超過하는 駐車料를 徵收토록 함 (案 別表 1 : 備考)

3. 檢討意見

當該 駐車場 條例中 改定 條例案은 駐車場法 및 關聯法規의 改正에 따라서 一部 條項을 改正하는 事案으로 主要內容은 駐車料金 未納者에 대한 加算金 賦課를 強化하며, 國公有地上에 設置한 附設 駐車場을 一般人의 利用에 提供할 수 없도록 한 條項을 削除하고, 駐車專用 建築物의 建築基準을 緩和하여 駐車難을 解消하고자 하는 事項이며, 또한 短時間, 즉, 2時間內外에 駐車할 경우에는 料金 變動이 없으나, 駐車 回轉率 提高를 위하여 2時間內外 駐車할 경우 料金을 引上하는 內容인바, 現實的으로 諸般 駐車 問題 解消를 위하여 바람직한 事項으로 判斷되나, 附設駐車場의 一般人의 利用問題와 路外駐車場의 一般人 利用 忌避等을 深度있게 檢討하여 管理者側과 利用者間의 摩擦을 最小化하여 民願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駐車 專用 建築物 建築時 建築物의 高度를 制限한바, 앞으로無分別한 駐車빌딩 建立으로 都市 美觀을 沮害하지 않도록 積極的인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것으로 思料됨.